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가단5253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제2항 기재 금융재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0. 3.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21,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리금융공사로부터 D에 대한 신용카드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1679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8. 14. ‘D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9,109,252원 및 그중 2,791,456원에 대하여 2012.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 2)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2020. 9. 14. 청주지방법원 2012가소16791 양수금 사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20. 9. 10. D에게 송달되었다.

나. D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D의 모 E은 2020. 3. 9. 사망하였는데(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금융재산(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이 있고,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F, D 및 피고가 있다.
-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3. 20. 이 사건 부동산 및 예금을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예금에 관한 1/3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4,221,9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을 부양하며 지출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D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 3, 5 내지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할협의는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합의에 따라 정한 피고의 기여분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이상 D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의 배우자인 G이 사망한 2006.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 이 사건 예금 계좌로 매월 25만 원 ~ 35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해 왔고, 망인의 수술비, 간병비 등을 부담해 왔다. 나아가 망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상속인 중 D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무자력 상태로 망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F이 망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예금 계좌로 정기적으로 지급한 생활비 외에도 망인의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F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및 예금을 모두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동의하였는데, D의 채권자들 때문에 F까지 자신이 갖는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아래 항에서 보는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더하여 볼 때, D과 F은 피고가 망인을 부양해 온 점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예금은 망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폐기물 처리비용과 미지급 관리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4) 망인과 상속인들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3년 가까이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간호하는 등 망인을 부양하면서 들인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 수고는 민법 제9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부양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예금을 유지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특별 부양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상속재산의 규모와 피고의 부양 정도를 비교해 볼 때, D와 F이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설령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거나 기여분 산정이 과다하여 피상속인 중 1인인 D의 채권자를 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늦어도 앞서 본 양수금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12. 8. 14.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8년이 지난 점, ② D와 피고가 가족관계이기는 하나 상당한 기간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D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채무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별지